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 3. 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6. 안미자 의원 외 8인

나. 회부일자: 2024. 2. 20.

다.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3.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권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내용

1) 금연구역의 신설 및 범위 변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구역 범위를 기존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변경

2) 기타 조문 띄어쓰기 정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다. 주요내용

1)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의견 없음)

나)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흡연자들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6조 제1항 제8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범위를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함.
-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23.8.16.)으로 시행(2024.8.17.)을 앞둔 상황에서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고 간접흡연의 사회적 심각성이 반영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자들의 증가 추세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2차 간접흡연과 흡연 시 발생한 유해물질이 옷가지들의 흡착된 후 배출되어 비흡연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3차 간접흡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가정보다 공공장소 실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국내 간접흡연 노출률 (보건복지부)>

대상	장소별	성별	2019	2020	2021	2022	상승률(%)
청소년 (중1~고1)	가정 내	남	-	23.3	22.3	22.5	- 3.43
		여	-	27.7	24.4	24.7	- 10.8
	공공장소 실내	남	-	35	32.8	44.3	26.5
		여	-	50	47.7	55.5	11.0
성인 (만 19세 이상)	직장 실내	남	18.1	14.1	11.5	-	- 36.4
		여	10.3	6.6	6.6	-	- 35.9
	가정 실내	남	2.8	2.3	2.4	-	- 14.2
		여	6	5.1	4.5	-	- 25.0
	공공장소 실내	남	21.3	13.4	8.4	-	- 60.5
		여	16.2	11	6.9	-	- 57.4

- 국가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을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
- 이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미터 이내를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신규로 지정함.
- 이 같은 금연구역 확대는 혐연권¹⁾과 흡연권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본질로 하는 기본권인 혐연권을 우선시하는 판례²⁾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등 개정의 시의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아울러, 공공장소의 공기 질이 향상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 위험이 감소되어 감염병 예방 등의 사회

1) 혐연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등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 주장(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2)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적 건강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략